

「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6. 11. 21(월) 평창군수(주민생활지원과장)
- 회부일자 : 2016. 11. 25(금)
- 상정일자 : 2016. 12. 07(수) 제224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)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와 관련,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는 상위법과 일치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류지웅)

-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관련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,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